

[] 제조 []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		
신청인 (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)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		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(전자우편:)			
	소재지(사업장)	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			
신청사항	화학물질명 (총칭명)					
	고유번호 (CAS No.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)					
	①화학물질의 구분	[] 기존화학물질	[] 신규화학물질			
자료 소유자 정보	②상호(명칭)	③ 사업자등록번호				
	④성명(대표자)	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(전자우편:)			
	⑥ 소재지(사업장)	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			
⑦해당 시험항목명						
⑧사용동의 거부사유						
수입자 (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)	⑨ 상호(명칭)	⑩ 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⑪ 대표자	⑫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⑬ 수입량(톤)	⑭ 수입국
⑮수탁자 (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)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대표자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사업장 소재지	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[] 제조 []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2. 국외제조·생산자에 의한 선입사실 신고증 1부(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입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) 3.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(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1. ①란은 신청하려는 화학물질의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 여부를 적습니다.
2. ②란부터 ⑥란은 해당 시험자료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.
3. ⑦란은 사용동의를 거부하는 해당 시험항목 명을 적습니다.(복수인 경우 모두 적어야 합니다)
4. ⑧란은 사용동의 거부사유를 기술합니다.
5. ⑨란부터 ⑭란은 신청자가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라 선입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. 다만, ⑬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.
6. ⑮란은 신청자가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